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5. 7. 14. Vol. 27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 2025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같은 날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함.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며, 7월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961명으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였음.
 - 풍수해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까지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 주요 농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음.
 -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등)에 대해서는 균열, 누수, 변형 여부 및 장비 확보, 감시 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함.
 -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돌봄, 낮 시간 농작업 자제 안내,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을 지원함.
 - 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 복구, 2차 피해 방지 기술 지원,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임.
 -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에서 제한 급수를 실시 중이며,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 지하수 공공 관정, 양수 장비 등을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와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 솟음 관리, 철도 레일 온도 예측 시스템 및 자동 살수 장치 운영, 항공 중점 관리 시설 살수 작업 등 분야별 안전 관리 대책을 이행 중임.
 -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위험 비탈면 점검 및 IoT 활용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운영, 철도 운행 안전 확보,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 점검 및 우회 항로 확보, LH 공공 임대주택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 통제와 인명 구조를 추진할 예정임.

* 출처: 행정안전부('25.05.26.)
국무조정실('25.07.10.)
정책브리핑('25.07.10.)

국내 경제 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동결 ▌2025-07-10 한국은행, 2025-06-27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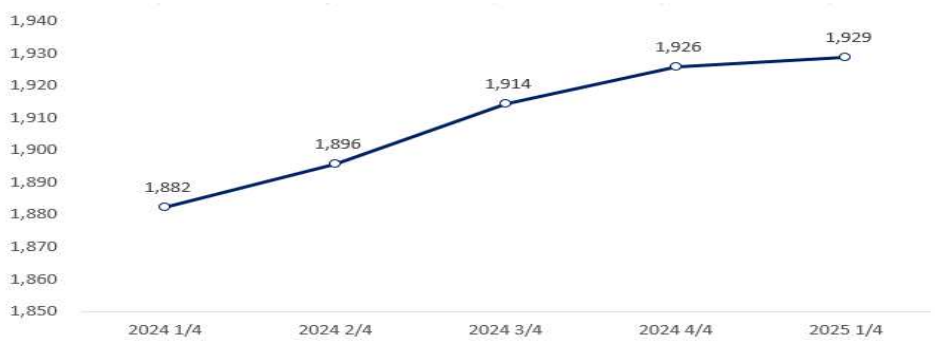
- 2025년 7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 '25년 4월 2.75%에서 2.50%으로 0.25%p 인하한 이후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
-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함. 또한,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는 '24년 1분기부터 꾸준히 늘어 '24년 3분기에는 1,900조 원을 넘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5년 1분기 기준 현재 총 가계부채는 1,929조 원)
 - 지난 '25년 6월 27일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
- 앞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발 고관세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
 - 국내 경제는 건설 투자는 감소했으나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물가상승률 또한 앞으로 2.0%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와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2024~2025년 월별 한국 기준금리 추이▌



▌2024~2025년 분기별 가계부채 추이▌

단위 : 조 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1.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2025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2.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1.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2.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1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내 2채 이상 보유시 생활 안정 주담대 금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1.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 강화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70%)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 축소 조정 3.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4.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90%→80%)

세계 농업·농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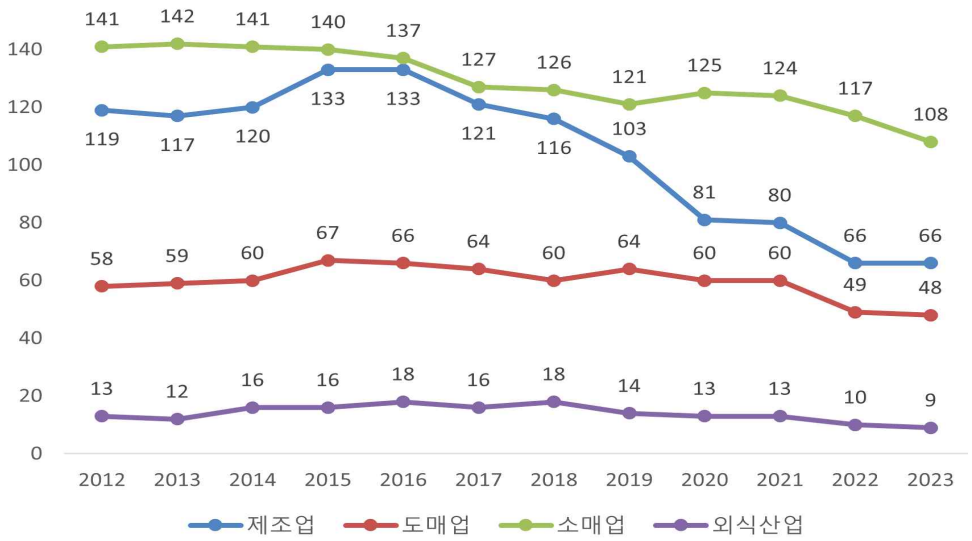
○ 일본 정부 2023년 사업계 식품 손실량 공표 ▌2025-06-27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은 소비자청, 환경성과 협력하여, 식품 손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관련 사업자가 배출하는 사업계 식품 손실량을 추계·공표하고 있음.
 - '식품 손실(食品ロス)'이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식품을 의미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감축하기 위해 2019년 「식품 손실 삭감추진법」을 제정하고, 2020년 3월에는 「식품 손실의 삭감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하였음.
- 2023년도 전체 식품 손실량은 464만 톤(전년 대비 8만 톤 감소)이며, 이 중 사업계 식품 손실량은 231만 톤(전년 대비 5만 톤 감소)으로 추정됨.
 - 전체 식품 손실량: 570만 톤('19)→522만 톤('20)→523만 톤('21)→472만 톤('22)→464만 톤('23)
 - 사업계 식품 손실량: 309만 톤('19)→275만 톤('20)→280만 톤('21)→236만 톤('22)→231만 톤('23)
- 농림수산성은 2025년 3월 개정된 「식품 순환자원 재이용 촉진법」 기본방침을 통해, 2030년까지 사업계 식품 손실량을 2000년 대비 6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반 수요 예측 고도화, 신기술 및 시스템 도입, 납품 기한('3분의 1 룰'*)의 유연화, 유통기한 연장, 푸드뱅크 및 아동급식소 등 복지시설 기부 확대 등의 정책 추진 중

*소매점 등에서 납품받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의 1/3 이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반품 및 폐기하는 일본 유통업계의 식품 납품·유통기한 관리 관행

▌일본 사업계 식품 손실 추이(2012~2023) ▌

단위 : 만 톤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7-07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025.9.19 시행 예정)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와 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함.
- 먼저, 개정안은 사회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명시함(안 제17조).
 -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포함
- 또한 식생활 교육주간의 시기와 운영 방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
 - 국가 및 지자체는 해당 주간을 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운영 가능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산 기반 조성 및 식생활 인식 개선과 국민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됨.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사회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4.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식생활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주간을 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